

제 1 장

총 칙

제정 2024.4.1

제 1 조 규정의 근거

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 9 조(지역체육회)에 근거하여 제 62 조(규정 및 세칙)에 의해 지역체육회 규정을 제정한다.

제 2 조 목적

지역의 한인 체육인을 대표하고 체육운동을 범 동포 화하여 한인 교포의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소관지역 경기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합 지도 감독하여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고 본회에서 인준된 지역체육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소속 및 명칭

1 항, 각 소관지역의 한인 체육인과 체육단체 대표하여 본회에서 승인된 “지역체육회”로 재 캐나다 대한체육회 지회로 소속된다.

2 항, 각 지역체육회의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명칭으로 “OOO 체육회”로 한다. 또한, “캐나다대한체육회 OOO 지회”로 표기할 수 있다. 영문으로 “OOOO Chapter of KSOC in Canada”로 표기한다. 약칭으로는 “OOOO Chapter of KSOC Canada” 로 한다.

3 항, 총회 의결로 법적인 등록 또는 지역사회(북미 주류)에 부합되는 영문을 달리할 수 있으며 표기를 KOREAN-CANADIAN OOOOO ASSOCIATION OF KSOC 로 할 수 있다.

4 항, 캐나다전체 한인을 총괄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체의 캐나다지부일 경우에만 그 단체에 “캐나다대한”을 명칭 앞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- 가) 캐나다전체 한인을 총괄하는 단체가 아니면 “재캐나다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- 나)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체의 직접 지부가 아니면 “대한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 4 조 본부

“주(PROVINCE)”를 대표하는 지역체육회는 소관지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(CITY)에 본부를 두는 것이 원칙이며 “시(CITY)”를 대표하는 지역체육회는 소관지역 “시(CITY)”에 지역체육회 본부 사무실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조 법인등기

지역체육회는 본부지 주(PROVINCE)와 본부지 시(CITY)에 비영리 단체로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사업

1 항, 지역체육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둔다.

- 가) 소관지역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.
- 나) 각 지역경기단체 지도육성 및 지휘감독.
- 다)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주관.
- 라) 각 지역경기단체의 대회개최 및 주관의 승인과 지원.
- 마) 지역체육대회 개최하여 교포단합을 한다.
- 바) 본회가 주최, 주관, 또는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, 주관, 후원, 지원 등 한다.
- 사) 소관 지역의 대표 선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대회 및 캐나다체전에 출전.
- 아) 각종 체육대회를 통하여 청소년 여가선용 및 선도에 관한 사업.
- 자) 동포 상호간의 유대와 친선 그리고 체력증진에 관한 사업.
- 차) 기타 본회와 교포사회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.
- 카)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홍보 및 출판물 발간.

2 항, 지역체육회는 상기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

구 성

지역체육회는 “본부”와 “지역경기단체” 그리고 관할 구역 내에 “지부”로 구성한다.

제 7 조 지역체육회 본부

- 1 항, 지역체육회 본부는 집행부로 소관지역의 한인 체육을 대표한다.
- 2 항, 본회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산하단체로서 지휘 감독을 받는다.
- 3 항, 소관 지역의 각 종목 한인경기단체(지역경기단체)를 산하단체로 가맹 승인한다.
- 4 항,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체육회는 소관지역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5 항, 승인된 지역경기단체와 지부 및 예하조직(CLUB)을 지휘 감독하며 보호 육성할 의무도 갖는다.
- 6 항, 캐나다체전의 정식 종목을 모두 가맹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소한 5 개 종목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.
- 7 항, 지역체육회는 본 규정과 본회 회칙에 준하여 자체 정관과 세칙을 제정한다.
- 8 항, 캐나다체전에 지휘 대표팀을 출전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며 최소한 3 종목 이상 출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지역경기단체

- 1 항, 지역경기단체는 본 규정 제 7 장에 의거 승인 인준된다.
- 2 항, 본회 규정에 의거 회원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.
- 3 항, 지역체육회의 승인된 지역경기단체는 지역체육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- 4 항, 지역경기단체의 대표자는 지역체육회의 당연직대원이 된다.
- 5 항, 지역경기단체의 가맹승인 및 탈퇴는 지역체육회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.
- 6 항, 지역체육회는 본 규정 제 7 장에 준하여 지역경기단체규정을 정한다.

제 9 조 지부

지역 체육회는 본회 규정 및 본 규정에 준하여 소관지역 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. 그러나 지부의 위치에서 80 KM 이내에 타주 지역 체육회 본부가 있을 경우 같은 주라고 할지라도 지부를 둘 수 없다. 그리고 카운티 접경 지역일 경우 35 KM 이내에 타 CITY 혹은 PROVINCE 체육회가 있을 경우 지부를 둘 수 없다.

제 3 장

조 직

지역체육회는 본부, 대의원, 이사로 조직한다.

제 10 조 지역체육회 본부

지역체육회의 본부를 임원, 감사, 분과위원회,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한다.

1 항, 임원은 회장 1 인, 부회장 약간인, 전무이사 1 인, 사무국장 1 인, 재무 1 인을 기준으로 하며 단체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본회 정관을 참고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또한 임원조직에 같이 편성할 수 있다.

2 항, 감사는 2 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
3 항, 단체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4 항,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본회에 통보하여야한다.

5 항, 행정을 담당하는 직책 명칭을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대한체육회(한국) - 사무총장
2. 재 캐나다 대한체육회(캐나다) - 사무처장
3. 재캐나다 중앙경기단체 - 전무이사
4. 지역체육회(지회) - 사무국장
5. 지역 경기단체 - 총무
6. 지역 회(CLUB) - 주무

제 11 조 대의원

지역체육회의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, 본부대의원, 위임대의원으로 구분한다.

1 항, 당연직 대의원

- 가) 지역체육회의 가맹 승인된 지역경기단체는 각 1 인의 대의원을 지역체육회에 둔다.
- 나) 지역경기단체의 현직대표자는 지역체육회의 당연직대의원이 자동으로 된다.
- 다) 당연직대의원은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2 항, 본부대의원

- 가) 단체의 회장, 부회장과 전무이사는 본부대의원이며 그 자격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
- 나) 지역경기단체장이 본부대의원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직대의원자격만 주어진다.

3 항, 위임대의원

- 가) 당연직대의원의 권한을 본 규정(11 조 1 항)에 의거 위임장(KSC -101)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.
- 나)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단체의 현직부회장, 전직회장과 현직총무로 한다.
- 다) 위임대의원의 위임장은 총회개회 전까지 지역체육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) 위임대의원은 그 자격은 소집된 당 총회에만 한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 13 조 임기

1 항, 회장의 임기 및 연임

- 가) 회장의 임기는 4 년을 기준으로 정기 2 년 임기와 2 년 1 회 연임으로 구분한다.
- 나) 연임이 본 규정 1 회를 초과하여 2 차 연임부터는 회장선출 총회 21 일전 본회에 총회감독관 참관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다) 회장의 임기는 1 월 1 일부터 후년 12 월 31 일까지 2 년으로 하되 회장선출 일을 기준으로 한다. 또한,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시작과 종료 시기를 달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라) 회장은 지역체육회 이하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겸임할 수 없다.

2 항, 모든 임원, 분과위원장, 감사, 위촉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고 회장을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 할 수 있다.

3 항, 대의원

- 가) 당연직대의원의 임기는 소속단체 대표자 자격이 유효할 때까지로 한다.
- 나) 본부대의원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같으며 본부조직 직책을 유지할 때까지로 한다.

4 항, 임원은 회칙에 명시한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차기임원이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4 조 본부조직의 선임

1 항, 임원, 감사 및 분과위원장

- 가) 회장 1 명, 감사 2 명은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.
- 나) 부회장은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다) 기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2 항, 위촉위원

- 명예회장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 단, 해당 지역체육회의 회장을 역임한 상임고문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.
- 고문
 1. 해당 지역체육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임고문이 된다.
 2. 일반 고문을 둘 수 있으나 본회정관 제 17 조(임원 피임자격)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자문위원
 1. 당 지역체육회의 취지를 동조하며 지역체육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.
 2. 회장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.

3 항,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명단을 본회에 30 일 이내에 보고한다.

제 15 조 임원 피임자격

임원의 피임자격은 본회정관 제 17 조(임원 피임자격)와 같이하며 1 항과 4 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16 조 보선 및 직무대행

본회 정관 제 18 조(보선 및 직무대행)의 원칙을 따른다.

제 17 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

- 1 항, 회장은 지역체육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합하며 총회 및 대위원 의장이 된다.
- 2 항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서면으로 지명하거나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결정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- 3 항, 감사는 당해 지역체육회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 회 이상 감사보고를 총회에 보고한다. 필요한 경우 비대위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.
- 4 항, 지역체육회의 대위원은 대위원회를 조직하고, 위원회 총회에 출석하여 해당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5 항, 회원 및 임원, 대위원은 본회의 제반규정 및 본회 및 지역체육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, 이행 할 의무를 진다.
- 6 항, 지역체육회의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소속단체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제 4 장

지 역 체 육 회 승 인 및 구 성

제 18 조 지역체육회 가입승인 요건

- 1 항, 캐나다 내의 “주(PROVINCE)” 또는 “시(CITY)” 별로 구분하여 본회에서 승인된다.
- 2 항, 소관지역의 각 종목별 한인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를 통합 지휘 감독하는 단체이다.
- 3 항, 소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종목별 한인경기단체를 가맹단체로 두며 또한 본회가 개최하는 캐나다체전 정식종목을 모두를 가맹단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4 항,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제반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지역체육회의 구분

본회 회칙을 충족하고 본회에서 가입승인 받은 단체를 지역체육회로 한다. 또한, 본회는 지역동포 체육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준 지역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권리사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제 20 조 가입절차 및 승인

1 항, 본회 지역체육회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) 구비서류
 1. 지역체육회 가입원서 - 1 부
 2. 집행부(임원) 명단 - 1 부
 3. 단체장 이력서 - 1 부
 4. 지역경기단체 명부와 단체장 명단 - 1 부
 5. 지역체육회의 정관 및 규약 - 1 부
 6. 관할지역 한국공관 및 한인회 현황 - 1 부
 7. 단체연혁 - 1 부
 8. 단체결성 총회 회의록 - 1 부
- 나) 본 규정 제 18 조(가입승인요건)를 이행하고 본회의 승인 후 지역체육회가 된다.
- 다) 본회는 승인된 지역체육회에 “승인 증”을 발급한다.

2 항, 가입 승인은 본회 사무국 집행부에서 심의하며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.

제 21 조 권리 및 의무

1 항, 지역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.

- 가) 공인된 단체 명칭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.
- 나) 인준된 소관지역의 한인동포 체육을 대표한다.
- 다) 지역체육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 권위가 주어진다.
- 라) 지역체육회는 본회에 건의와 소청 권리를 갖는다.
- 마) 본회가 위임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, 후원할 수 있는 권리
- 바) 본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- 사) 각종 체육대회에 소관지역 한인동포 대표 팀 구성 권한을 갖는다.
- 아) 본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그 권한을 갖는다.

2 항, 지역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.

- 가) 본회 회칙 및 본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, 이행 할 의무를 진다.
- 나)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다) 자체 상벌관계를 보고하여 업무공조를 한다.
- 라)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다.
- 마)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, 주관 할 때에는 사업계획과 동시에 본회에 보고한다.
- 바) 대회참가 및 외부단체 초청 관계를 본회와 사전 합의한다.

- 사)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체, 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종류 후 사업결과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30 일 이내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아) 본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

제 22 조 지역체육회의 회기

- 1 항, 지역체육회의 회기를 만 1 년으로 한다.
- 2 항, 지역체육회의 회기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동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- 3 항, 지역체육회 실정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.

제 23 조 총회시기

- 1 항, 지역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종료 30 일전 이내에서 개최한다.
- 2 항, 지역체육회는 총회계획을 총회 개최일 21 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한다.
- 3 항, 지역체육회는 총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한다. 또한, 회장선출이 있는 총회보고서는 본 규정 제 24 조와 같이 별도로 규정한다.

1. 단체장 보고서
2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3.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
4.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5. 당 총회의 회의록
6. 관할 한국공관 및 한인회 현황

- 4 항, 지역체육회는 본 규정 제 13 조 나)항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 항, 지역체육회는 본 규정 제 13 조 나)항에 이의 본회에 총회감독관을 요청할 수 있다.
- 6 항, 본회는 지역체육회의 정상적인 총회가 확인되면 그 단체자체 다음 정기총회까지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진다.

제 24 조 대표자(회장) 인준

- 1 항, 본회의 승인된 지역체육회에서 새롭게 선출 확정된 단체회장은 다음과 같이 본회에서 확인되며 그 자격이 주어진다.

- 가) 회장확정 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다음의 총회보고서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해당단체의 회장인준을 받는다.
 1. 단체장 변동보고서
 2. 단체본부 임원보고서
 3. 회장선출 회의의 회의록 및 선거결과 보고서
 4. 회장선출 회의에 회의권자 참석서명 명부

5. 지역경기단체 현황 및 단체장 명단

6. 관할 한국공관 및 한인회 현황

- 나) 상기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본회 선거감독관 보고서(선거를 참관하였을 시)에 의하여 본회에서 인준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 항, 본 규정에 의거 인준된 단체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규정된 임기기간 동안 본회의 대의원자격이 주어진나 본 규정 제 23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3 항, 본회에 보고된 모든 보고서는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.

제 5 장

대 의 원 총 회

제 25 조 대의원총회의 권위

1 항, 대의원총회(“총회”라 칭함)는 지역체육회 최고의, 최종의결 기관이다.

2 항, 지역체육회의 기타 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.

제 26 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

1 항, 본 규정 제 3 장 제 11 조(대의원)에 의거 구성한다.

2 항, 지역체육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27 조 의결사안

- 가) 정관개정 및 수정
- 나) 지역체육회 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직위해제
- 다) 부회장 임명동의
- 라) 선거 관리 위원장 인준 동의
- 마) 임원, 이사의 해임 및 복권
- 바) 지역경기단체 승인 및 퇴출 또는 복권
- 사) 예산 결산 및 사업승인

- 아) 지역체육회의 해산 및 통합
- 자)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상정된 안건
- 차) 이사회 및 기타기관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
- 카) 기타 필요한 사안

제 28 조 대의원총회의 종류 및 소집

지역체육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1 항, 정기 대의원총회

- 가) 지역체육회의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규정된 회기 마지막 12 월 중에 개최 한다.
- 나) 지역체육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 항, 임시 대의원총회

- 가)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한다.
- 나) 재적대의원 1/3 이상의 동의하에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,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21 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- 다)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, 소집권자는 접수 날로부터 21 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.
- 라)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요구를 하였을 때.

제 29 조 의제 (안건)

1 항, 회장은 총회의 의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의제가 된다.

- 가) 지역체육회 대의원 3 인 이상 동의를 얻어 문서로 건의된 안건.
- 나) 대위원 총회에서 의결 된 총회상정 안건.
- 다) 총회 도중에 긴급 안건을 부의 할 수 있다. 단, 긴급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여야 의제가 된다.

2 항, 개인 또는 1 개 단체가 안건 건의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의 되어야 의제가 될 수 있다.

제 30 조 대의원총회의 성원과 의결

1 항,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의제확정은 다음과 같이한다.

- 가)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의결 찬성 수는 변경할 수 없다.
- 나) 회칙규정과 상반되는 의제를 의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상반되게 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의 2/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 확정된다.
- 다) 본 항 가), 나)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확정된다.

- 2 항, 의장은 총회에서는 표결권이 없으며, 의제의 표결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3 항, 의결방법은 의제별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당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4 항,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총회에서 결정할 때는 그 시행 마감일이 함께 결의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1 조 총회 의결 제한

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.

- 1 항, 지역체육회 회장은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당 총회 의장이 될 수 없다.
- 2 항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과 대의원은 그 의제에 결정권 및 의결권이 없다.
 - 가)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징계사항
 - 나) 금전의 수불과 재산의 거래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.
- 3 항, 상기 2 항 가),나)에 관련자는 표결 시 대의원 재적수에서 제외된다.

제 32 조 총회운영규정 및 보고

- 1 항, 총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방법은 당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 항, 총회계획 및 결과를 본회(재미대한체육회)에 보고한다.

제 33 조 총회소집통보 및 공고

- 1 항, 소집을 요하는 통보에는 회의의 종류, 토의의제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고, 지역체육회 명으로 한다.
- 2 항, 선거가 있는 년도의 총회소집 통보는 상기 내용과 선거내용 및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을 명시하여 통보한다.
- 3 항, 소집을 요하는 총회공고는 지역체육회에서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다.
- 4 항, 지역체육회는 지역경기단체와 이사에게 FAX, e-mail,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총회개최 14 일전까지 통보한다.

제 34 조 총회 특례

- 1 항, 소집권자 이외의 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 대의원에 의해 소집된다. 단, 본회(재캐나다대한체육회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가) 본회(재캐나다대한체육회)가 문서로 요구할 때.
 - 나) 본부 집행부가 문서로 집단사퇴를 명시하였을 때.
 - 다) 본 규정 또는 지역체육회 규정에 의거한 총회소집을 소집권자가 본 정관에서 명시한 시일 내에 소집을 기피할 때.
 - 라) 총회 소집권자가 공식으로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.

2 항, 총회의 특례상황에서 소집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을 한다.

제 6 장 대 위 원 회 의

대위원회의는 지역체육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
제 35 조 이사회의 구성

- 1 항, 대위원회의 의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의 순으로 한다.
- 2 항, 대위원회는 대의원와 추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- 3 항, 대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그 업무관리를 한다.
- 4 항, 지역체육회의 사무국장 또는 총무는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 36 조 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가)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나)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
- 다)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라) 규정개정 건의의결
- 마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바) 총회 부의안건
- 사) 제반규정에 의한 세부사항
- 아) 제반규정위반에 대한 심의
- 자) 각종 위원회의 조정 통합
- 차) 기타 필요한 사안

제 37 조 대위원 소집

- 1 항, 대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2 항, 회장이 대위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최일 14 일전에 각 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3 항, 대위원 1/3 이상이 대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요구일로부터 21 일내로 소집한다.

제 38 조 대위원 성원 및 의결

1 항, 대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
2 항, 대위원회의 결정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39 조 상임대위원회의 설치운영

지역체육회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임대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할 수 있다.

1 항, 상임대위원 구성은 본 규정 제 12 조(이사) 3 항과 같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2 항, 상임대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또한,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장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한다.

3 항, 회장은 상임위원 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7 일 이내 상임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4 항, 상임대위원회의 운영과 의결의 효력은 대위원회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대위원회에서 미리 정할 수 있다.

5 항, 상임대위원회의 의결 사안을 차기 대위원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대위원이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안건으로 부의되어 심의한다.

제 40 조 긴급처리

1 항,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소집 되는 대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항,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결의대위원회 소집결의로 할 수 있으나, 재적대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7 장

지 역 경 기 단 체 가 맹 및 회 원

제 41 조 지역경기단체총칙

1 항, 지역경기단체는 지역체육회(“주”, “시”)에 가맹 승인을 우선으로 하며 지역체육회는 가맹된 단체를 본회에 보고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지회로 승인을 받는다.

2 항, 인준된 지역경기단체는 소속된 지역체육회에 대하여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각 “주”, “시”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) 지역명을 앞에 넣고 종목을 다음에 사용하여 “OOO ZZZ 협회(회, 연맹)”로 한다. 또한, “재캐나다대한 ZZZ 협회(회, 연맹) OOO 지회”로도 표기할 수 있다.
- 나) 영문은 “OOO Chapter of 를 중앙경기단체 영문 명칭 앞에 넣어 사용한다. 또한 지역적 특성과 주류사회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영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“KOREAN Sports ZZZZ ASSOCIATION of OOOO”

3 항, 지역경기단체는 소관지역 내에서 구역별로 산하단체로 각 “주” 또는 “시”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
4 항, 지역경기단체는 그 사무소를 지역체육회 소재지에 둔다. 다만,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5 항, 지역경기단체 규약은 중앙경기단체 회칙을 준수하여 제정하되 지역체육회를 경유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회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중앙경기단체 지도. 감독을 받는다.

6 항, 지역경기단체 임원이 중앙경기단체 또는 지역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경기단체 상별규정 및 지역체육회의 상별규정에 따른다.

7 항, 본 조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회 회칙 및 본 규정, 지역체육회 및 각 중앙경기단체 규약(또는 정관) 등을 준용한다.

제 42 조 지역경기단체 구성 및 총회

1 항, 본회가 승인한 지역체육회에 가맹 승인된 “지역경기단체”는 소속 지역체육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다음과 같이한다.

- 가) 지역체육회에서 가맹승인한 지역경기단체가 중앙경기단체에 지회로 가입승인 되었을 때 중앙경기단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나) 각 지역경기단체는 집행부와 회(CLUB)가 1 개 이상 소속으로 있어야 한다.

2 항, 지역경기단체 총회의 구성은 보회 회칙을 준용하여 한다.

3 항, 지역경기단체 지회가 3 개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구성없이 대위원회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소속된 지회(club) 단체 당 2 인 이상 대위원을 배정하며 소속 지역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제 43 조 지역경기단체승인, 단체장인준

본회의 지역적인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기단체의 단체승인과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소관이며 다음과 같이한다.

1 항, 지역체육회는 경기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경기단체가 지역경기단체 설치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.

2 항, 지역경기단체 선임임원은 관할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3 항, 지역체육회는 지역경기단체 선임임원 인준 시 본회에 사전 조회를 할 수 있다.

4 항, 본회는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의견을 조회하여 지역체육회에 확인 통보한다.

5 항, 지역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지역경기단체장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에 지역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여 지회장 인준을 받는다.

6 항, 지역체육회에서 인준한 선임임원을 중앙경기단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회장으로 인준하여야 한다.

7 항, 중앙경기단체는 지회장 인준신청에 시정사항이 있으면 2 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본회를 경유하여 해당 지역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8 항, 지역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9 항, 캐나다체전에 중앙경기단체 회장선거를 위하여 전 종목 지역경기단체장이 참석한다.

제 44 조 회원

회원의 모든 소관은 지역경기단체이며 본 규정을 준용한다.

1 항, 회원자격

- 가) 재캐나다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.
- 나) 부모 중 1 명(1/2)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) 체육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모든 모임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자 이어야 된다.
- 라) 소속 단체의 총회 또는 대위원회에서 그 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2 항, 회원의 구분을 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- 가) 회원은 1 항에 자격을 갖춘 각 지역경기단체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회원.
- 나) 명예회원은 본회를 비롯하여 체육계발전에 공헌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 지역경기단체에서 그 자격이 부여된다.

3 항, 회원의 소속 및 지역

- 가) 모든 회원은 각 소속단체의 소정의 서류(양식 KSOC-201)에 의하여 등록접수 한 단체에 소속된다.
- 나) 등록된 회원이 만 2 년 이상 소속단체에서 아무런 활동이 없었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- 다) 회원의 거주지가 소속 관할지역 본부보다 등록하고자 하는 본부가 멀었을 경우 (주 접경 체육회의 경우 35 KM, 주 접경 체육회의 경우 80 KM 이내) 관할 지역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 허용 반경 이내에 두 체육회가 존재할 경우 회원의 선택으로 결정한다.
- 라) 회원은 1 개 단체에 소속되며 이중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된다.
- 마) 소속단체에서 타 단체로 이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 1. 전 소속 단체에서 이적동의서(양식 KSOC-301)에 의하여 이적할 수 있다.
 2. 거주지 이사로 의한 이적은 이사 거리가 65 KM 이내 일 때에는 전 소속단체의 이적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.
 3. 소속단체에서 만 2 년 이상 단체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. 단, 전 소속에서 활동기간 동안의 의무를 완료하였어야 된다.

4 항, 회원의 의무 및 권한

- 가) 본회와 각 소속단체에서 주최,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에 출전할 수 있으며, 대표 팀 선발대상이 된다.
- 나) 본회와 각 소속단체의 규정 및 의결한 제반사항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.
- 다) 본회 또는 소속단체의 의무금을 납부 할 의무를 진다.

제 8 장

행 정

단체 간 간단한 업무협조는 직접 할 수 있으나, 본회의 승인된 단체 간 공무를 직접 할 수 없다 모든 공문서는 본회를 경유하여야 한다.

제 45 조 사무국

본회 정관에 명시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6 조 사무국 구비서류

1 항, 지역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.

1. 정관

2. 임원 및 고문, 자문위원, 대위원 명부
3. 가맹 지역경기단체 및 단체장 명부
4. 지회 및 지회장 명부(연락망)
5. 재정 출납장부
6.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
7. 자재 목록
8. 각종 회의록
9. 사업실적 기록부
10. 기타 공문서 발송 기록 및 접수 기록
11. 지회 및 지역경기단체 정관 2 항, 서류는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것 이외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서류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.

제 47 조 지역체육회자체 총회에 대한 보고서

회장은 해당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.

1. 회계 보고서(수입 및 지출결산서)
2. 자재 보유 현황보고서
3. 사업 실적 및 성과보고서
4. 지회 및 단체장 변동사항 보고서
5. 임원 변동 사항 보고서

제 9 장

선 거 및 업 무 개 시

제 48 조 선거

- 1 항,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.
- 2 항, 선거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실시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회 결정에 따른다.
- 3 항, 지역체육회의 총 대의원이 5 인 이하일 때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위원회에서 선임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4 항, 선거 관리 위원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
- 5 항, 회장당선은 총회에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확정된다.
- 6 항, 회장 후보자가 1 인일 경우에도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회장으로 당선확정 된다.
- 7 항, 감사 당선은 투표에서 상위득표 자 순위로 된다.
- 8 항, 회장 또는 감사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.
- 9 항, 선거운영세칙을 두어 선거를 실시한다.

제 49 조 회장의 업무개시

- 1 항, 회장의 업무개시는 당선확정일 다음날로 부터 한다.
- 2 항, 회장은 임원임명을 속히 하여 지역체육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.

제 50 조 업무 인계 및 인수

- 1 항,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한다.
- 2 항,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의 업무개시와 동시에 그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.
- 3 항, 구 집행부보직담당자는 새 집행부 보직담당자가 임명될 때까지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며 새 보직임명 즉시 모든 실무에 관한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.

제 1 0 장

회 칙 개 정 과 통 합 및 해 산

제 51 조 회칙개정 및 수정

- 1 항, 회칙이 개정 및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회장이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을 심의한다.
- 2 항, 회칙의 개정 및 수정안은 소집된 총회에만 상정되며, 재적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 된다.
- 3 항, 현직 임원은 선출 또는 임명되었을 때 당시의 회칙규정을 따른다.
- 4 항, 개정된 정관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2 조 통합 및 해산

1 항, 지역체육회는 다음 사유로 통합 및 해산한다.

- 가) 재적대의원 2/3 이상이 통합 또는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.
- 나) 본회에서 지역체육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산된다.

2 항, 해산하였을 당시에 잔여 자산은 지역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.

제 1 1 장

부 칙

제 53 조 중재 및 조정

1 항, 지역체육회는 대의원, 임원에 의해 시비(是非)가 발생할 경우 중재(仲裁), 조정(調停)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2 항, 지역체육회 내부의 모든 법정송사(法廷訟事)는 먼저 중재 및 조정기구가 그 문제점의 시비를 충분히 다루어 그 결과가 나온 후에만 가능하다.

3 항, 중재 및 조정기구를 상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.

4 항, 모든 법정송사는 중재재판(Arbitration)으로 한 한다.

5 항, 법정소송에서 재판포기 또는 재판부에 의해 기각(棄却) 및 패소(敗訴)한자는 법정소송에 지출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.

제 54 조 재적인수 제척

지역체육회에서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, 자격정지 된 자는 재적인 수에서 제외된다.

제 55 조 회의권자 및 발언권

1 항, 회의권자는 회의의 구성원이다.

2 항, 발언권 신청은 회의권자에게만 있다.

3 항, 임원 및 분과위원장은 각종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.

4 항, 의장은 회의권자를 제외하고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야 한다.

제 56 조 결의안 시행마감일

- 1 항,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안은 시행 마감일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 항, 시행마감일은 대의원총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.

제 57 조 결의 조치 및 기록

- 1 항, 결의안은 의장의 공포함으로 효력발생 한다.
- 2 항, 지역체육회는 결의사항을 대의원에게 공문으로 통보 하여야한다.
- 3 항, 회의록은 반드시 본회양식을 사용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58 조 규정 및 세칙

- 1 항, 지역체육회는 본회 회칙에 준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정관, 선거운영세칙, 지역경기단체규정, 상벌세칙 등등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본회에 모든 규정을 제출한다.
- 2 항, 지역체육회와 산하단체가 불분명한 시비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역체육회 회칙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한다.
- 3 항, 지역체육회는 비영리단체의 운영형식으로 한다.

제 59 조 기록

서류는 수정 없이 영구 보존한다.

- 1 항, 지역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.
 - 가) 해당 년도 본부 조직명부
 - 나) 지역경기단체 및 지회 조직명부
 - 다) 사업성과
 1. 지역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한 행사, 대회 계획과 결과
 2. 지역체육회가 행사 및 대회참가 계획과 결과 2 항, 상기

제 60 조 지역체육회규정 제정 및 발효

본 지역체육회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되었다.

본 지역체육회 규정은 총회에서 제정 확정되는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.